

April 06, 2016

지적재산권 부문 개정법률 소개

2016. 2. 29.자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법률인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 대한 개정법률이 공표되었으며, 2016. 3. 29. 특허법에 대한 또 다른 개정법률이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은 권리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법은 전문이 개정되고 조문의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6. 2. 29. 공표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4035호, 2016. 02. 29. 일부 개정, 이하 '14035호 개정 특허법') 및 개정 실용신안법(법률 제14034호, 2016. 02. 29. 일부 개정, 이하 '개정 실용신안법')은 2017. 3. 1.부터, 2016. 3. 29. 공표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이하 '14112호 개정 특허법')은 2016. 6. 30.부터 각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이하 '개정 상표법')은 2016.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위 각 개정법률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정 내용은 동일하고 실용신안법의 경우 준용 규정도 다수이므로 개정 조문은 특허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14035호 개정 특허법 및 개정 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 (2017. 3. 1. 시행예정) >

1.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그런데 최근 심사관의 업무과다 등으로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 검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 특허법은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결정하고 법원 절차에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결정계 절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무효심판(당사자계 절차)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Ex Parte 재심사 제도, 유럽(EPO)과 일본의 결정계 이의신청 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66조의3 신설)

설정등록 전 검증절차 강화의 일환으로 직권 재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권 재심사 제도에 따르면 심사관이 특허 결정을 한 후 설정등록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 유럽 특허청에서 운영되는 재심사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제59조제2항)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도 미국(출원과 동시), EPO(2년), 중국(3년), 일본(3년) 등 주요국 중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제35조 단서)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 모인특허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등록공고 후 2년이 지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정당권리자가 보호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공고 후 2년 이내'의 요건을 삭제하고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되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권리자는 무효심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모인특허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효를 널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제99조의2 신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당권리자로서는 절차상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제도였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특허권의 이전(공유의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권리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정당권리자에 대한 2-track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6. 외국심사결과 제출명령 제도 도입(제63조의3)

동일 기술을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와 상호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공개 출원과 주요 국가 이외 국가의 심사결과는 확인이 어려워 외국 심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 문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 특허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이상의 주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14035호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현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취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기간 연장 (제1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국민의 권익 보장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 (제35조 단서)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날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무효심결 지연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피해 감소
특허출원의 심사 청구기간의 단축 (제59조제2항)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조속한 권리확정 유도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66조의3 신설)	-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 설정등록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설정등록 전 검증절차 강화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의 도입(제99조의2 신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특허권의 이전(공유의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당한 권리자의 편의 도모

항목	현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취지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가능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 검증 강화
외국심사결과 제출명령 제도 도입(제63조의3)	-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시 심사관은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음.	하자 특허 방지를 위해 외국의 심사결과 활용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제216조)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	공개 전에 취하간주된 선출원이 열람대상인지에 관한 논란 해소
소송당사자 절차 중지신청(제164조 제1, 2항)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각 중지할 수 있음.	심판장이나 법원은 직권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그와 같은 심판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의 심결 확정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침해소송에서의 심판결과 활용 활성화
법인 해산시 특허권 소멸규정 정비 (제124조 제2항)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 소멸	자연인이 아닌 법인 해산시 특허권의 소멸 처리 명확화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고시로 운영하던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전문기관 지정취소 규정'을 특허법에 입법화

항목	현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취지
직권보정제도 정비(제51조, 제66조의2)	거절이유가 아닌 명백히 잘못된 기재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 후 특허결정 가능	거절이유사항이지만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내용인 경우 (예컨대 마지막 보정 단계에서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내용으로 거절이유가 포함되는 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직권 보정 후 (부동의시 특허취소 조건부) 특허결정 가능	사소한 실수로 특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특허거절되는 경우 최소화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제133조의2)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가능	정정청구가능기간과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보정가능기간(정정 불인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취하 가능	무효심판 대상의 조기 확정

〈 14112호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2016. 6. 30. 시행예정) 〉

1. 특허료 등의 반환 범위 확대

현행 특허법 제84조 제1항은,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제1호),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제2, 3호), 특허출원 후 1개월 내에 취하/포기시 특허출원료 및 우선권주장신청료(제4호), 심사청구 후 협의결과신고명령/선행기술조사결과통지/거절이유통지/특허결정등본송달 전까지 취하/포기한 경우 심사청구료(제5호)에 한하여 특허료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112호 개정 특허법은 여기에 제8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제6호),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료(제7호), 심판청구 각하결정 확정시 심판청구료의 1/2(제8호),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참가신청 취하시 참가신청료의 1/2(제9호), 참가신청 결정거부시 참가신청료의 1/2(제10호),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심판청구 취하시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11호)에도 심사청구료/특허료/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시 당사자의 감정인에 대한 설명 의무화

14112호 개정 특허법은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 대상범위 확대 및 불응의 효과

현행 특허법 제132조는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

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112호 개정 특허법은 위 규정을 제132조 제1항으로 유지하면서,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소정의 ‘in camera’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고(제3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48조와 유사한 불응의 효과를 규정하였으며(제4항), 자료제출신청자가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항).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1. 상표 등 정의규정의 정비

〈개정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개정 상표법은 서비스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서비스표를 상표로 일원화하였고, 한정열거적으로 제한하였던 표장의 유형을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로 변경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정비

개정 상표법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였으며, 소멸 시점에 관해서도 불사용취소심결 확정 시 장래를 향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종전 상표법과 달리,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심리의 지연이 방지되고, 심결확정에 따른 권리 소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논의되었던 ‘심판청구일 전 3개월 이내의 사용을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하는 내용은 본 개정 상표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상호 등 사용에 관한 상표권 효력 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현행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호는 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한 제3자의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표장이 식별력이 없는 형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상표권 효력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이하 "상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표장을 상호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특정적으로 상표권이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은 위와 같이 자기의 상호 등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다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현행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상호 등의 보유자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표권 효력 제한의 범위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훨씬 협소한 반면, 자기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경우 자기 상호 등의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상표법은 상호 등 사용에 관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삭제하고 대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자기 상호 등의 사용은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부등록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의 변경

현행 상표법은 제7조 제1항의 상표부등록사유를 공익적 거절사유와 사익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사익적 거절에 해당하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 하에서는 비록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시에 존재하였던 부등록사유를 등록여부결정시에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을 취하하고 재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상표법은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사익적 거절사유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시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상표법 하에서는 후출원상표 출원 시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였다면 선등록상표가 심사과정에서 소멸되었다더라도 등록될 수 없었으나, 개정 상표법 하에서는 선등록상표가 등록여부 결정 시 소멸하였다면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 등의 상표법과도 그 취지를 함께 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 출원을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개정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현행 상표법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등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거절사유로 규정하였고(제23조 제1항), 그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심판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당사국의 상표권자가 그 대리인 등의 무단 출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 청구시기를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개정 상표법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을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출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의신청 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일반 상표부등록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등록된 경우에도 취소심판 사유에서 무효심판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본 규정으로 인한 등록거절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은 권리자의 정보제공 등이 없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약당사국의 등록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의 삭제

현행행 상표법은 선등록상표가 소멸된 뒤에도 이에 남아 있는 신용 등으로 인한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상표출원을 등록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상표간의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도 상표 사용권 설정이 허용되는 등 실제 위 규정을 통해 출처의 혼동가능성 방지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표법은 위 규정을 삭제하여 선등록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1 | E-Mail. bklim@shinkim.com |
| ● 류정선 변호사 | TEL. 02 316 1732 | E-Mail. jsryu@shinkim.com |
| ● 박성현 변호사 | TEL. 02 316 1772 | E-Mail. shypark@shinkim.com |